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과 학 기 술 기 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(법률 제18863호, 2022. 6. 10. 공포, 2022.12.11. 시행)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 및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
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,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비 등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 관련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을 규정한다.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의3)

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위원의 지명 및 위촉, 위원의 해촉,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) ①법 제8조의4조제1항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(이하 “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(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당해 업무 수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2.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②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) ①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
2.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</u> <u>의 기능 및 운영) ①법 제8조의4</u> <u>조제1항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</u> <u>기구(이하 “과학기술전문 자문기</u> <u>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</u> <u>(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</u> <u>단체별 당해 업무 수행에 관련된</u> <u>사항으로 한정한다)에 대한 자문</u> <u>을 수행한다.</u> <u>1.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</u> <u>단체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</u> <u>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</u> <u>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</u> <u>사항</u> <u>2.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</u> <u>단체의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</u> <u>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</u> <u>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</u>

<신 설>

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
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
사항

②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회의
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6조의3(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
의 구성) ① 과학기술전문 자문기
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
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중
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
서 과학기술정책업무를 담당하는
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
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
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
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
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
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의

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
한 사람

2.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
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
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전문 자
문기구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
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
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
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
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
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
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
경우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
연임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734